

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센터 및 사무실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·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6월 18일

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1. 설치목적

센터 및 사무실 복도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외부인의 무단침입자 감시, 교육물품, 장비의 도난을 방지하며,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안전사고·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고자함

2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「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」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「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」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
- 행정절차법 제46조 「행정예고」
-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「행정예고의 대상」

3. 공고방법

-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(<http://www.hopejahwal.kr/>)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1.6.18. ~ 2021.7.18. (31일간)

5. 설치장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 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연번	설치 예정 장소	설치사유	비고
1	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 주차장 입구 1대 / 출입구 계단 1대 사무실 복도 1대	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, 보안강화 등	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촬영 없음
2	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 2층 복도 1대	안전사고 및 보안강화 등	
3	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 3층 복도 1대 / 식당 1대	안전사고 및 보안강화 등	
4	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 4층 공동육아나눔터 1대	안전사고 및 보안강화 등	

6. 촬영범위 및 시간

- 센터 및 주차장 입구, 2층 복도, 3층 복도 및 식당, 4층 공동육아나눔터 24시간
연속 촬영

7. 의견제출

○ 센터 및 주차장 출입구, 2층 복도, 3층 복도 및 식당, 4층 공동육아나눔터 방범용
CCTV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
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[붙임 1]을 작성하여 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(운영지원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센터 및 시설물 방범용 CCTV 설치 예고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FAX: 062)954-8005 전화: 062)954-8004

라. 보내실 곳: 광주 광산구 광산로 57-1(송정동) 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광산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팀 담당자